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를 “2a-1-2 및 2a-4-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를 “2-14-1 및 2-14-2”로 한다.

제120조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137조제3항제3호가목 중 “지분증권:”을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한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다자간 장외거래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78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o-11-1, 2o-12-1, 2o-12-2, 2o-14-1, 2o-14-2, 2i-11-2i를 말한다.

③ 법 제1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순매수 금액(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복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 단위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한다.

1. 2o-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2. 2o-12-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3. 2o-14-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순매수 금액 1억원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외매매거래”를 “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해

당 수익증권을 지분증권 대신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를 “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로 한다.

③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0-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채무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채무증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채무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채무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10.>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업은 제외한다)	수채증권		
11-112-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제4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300
1a-4-2	투자매매업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15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20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l-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전문투자자	25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a-4-2	투자중개업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100
2o-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o-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5-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탁재산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 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 및 3-15-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2o-11-1,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18. 특정 지분증권을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발행된 수익증권의 경우 2o-12-1, 2o-12-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인 “지분증권”에 포함하고 2o-14-1, 2o-14-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인 “수익증권”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40호의2 중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장외매매거래”로 한다.

별표 20 제130호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8조의2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변경 보고의 접수

부 칙

이 영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 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 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u>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u> <u>및 2o-14-2</u> 는 제외한다)를 말한 다.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 ----- ----- ----- ----- ----- <u>2a-1-2</u> 및 <u>2a-</u> <u>4-2</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같은 표 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가 <u>2l-1</u> <u>-1, 2l-1-2, 2-14-1, 2-14-2, 2</u> <u>o-12-1, 2o-12-2, 2o-14-1</u> 및 <u>2o-14-2</u> 인 투자중개업은 제외 한다)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 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2. ----- ----- ----- <u>2-14-</u> <u>1</u> 및 <u>2-14-2</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 상) ① (생 략)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 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 (생략)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② (생략)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

-----.

1.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

2. (현행과 같음)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생략)

3.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가. 지분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나. (생략)

④ ~ ⑥ (생략)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나.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7조(다자간 장외거래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78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o-11-1, 2o-12-1, 2o-12-2, 2o-14-1, 2o-14-2, 2i-11-2i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③ 법 제1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하
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일
반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순매
수 금액(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
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중
개업자가 복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 단위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한다.

1. 20-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
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2. 20-12-1의 인가를 받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
원

3. 20-14-1의 인가를 받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순매
수 금액 1억원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
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
-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

-- 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
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제7
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
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
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
고 해당 수익증권을 지분증권
대신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1-1의 인
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채무
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
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
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
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채무증권의 지
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
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
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
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채무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채무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u>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u>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u>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u> ④ ----- ----- ----- <u>제1항, 제2항 및 제3항</u>----- ---- <u>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4